

개인택시운송사업대리운전신고서				
※ 뒷면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				
개 인 면 허 자 (신고인)	①성 명		②주민등록번호	
	③주 소	(전화번호 :)		
	④택시운전 자격증번호		⑤면허연월일	
	⑥사업면허 번 호		⑦차량번호	
대 리 운 전 자	⑧성 명		⑨주민등록번호	
	⑩본 적			
	⑪주 소	(전화번호 :)		
	⑫택시운전 자격증번호		⑬발급기관	
⑬ 대 리 운 전 기 간		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(개월간)		
⑭ 대 리 운 전 사 유				
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귀하				
구 비 서 류	1. 신고인(개인택시운송사업자) 가. 택시운전자격증명 나. 진단서(1년이내에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) 다. 교통사고시설확인원(교통사고로 구금되어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) 2. 대리운전자 가.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각 1부 나. 택시운전자격증 및 운전면허증 사본 각 1부 다. 사진 1매			

※ 신고 안내

(뒷면)

신고하는 곳	서울특별시의 운수2과, 직할시의 교통지도과, 도의 교통행정과	처 리 기 간	5일
수 수 료	없 음		
유 의 사 항			
○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이 가능한 대상(시행규칙 제15조의4제1항)			
1. 질병(1년이내 치료가능한 질병)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			
2. 배우자 또는 동거자녀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			
3. 교통사고로 인하여 구금되어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(다만,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때,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때, 법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제외됩니다)			
4. 기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			
○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리운전한 경우의 벌칙(법 제31조)			
1차 : 운행정지 60일, 2차 : 위반차량 면허취소			
○ 대리운전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.			